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42
----------	-------

발의연월일 : 2025. 12. 9.

발 의 자 : 박범계 · 박찬대 · 강준현
이강일 · 김승원 · 허영
김남근 · 이정문 · 김현정
유동수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SK텔레콤, 롯데카드, 쿠팡 등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럼에도 일부 기업은 반복적으로 침해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반복적·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강화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정보주체인 국민들이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유출 가능성 통지 도입, 단체소송의 손해배상 청구 허용 등 피해구제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및 통지 항목 확대 등(안 제34조)

기존 통지 대상이던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뿐만 아니라 위조·변조·훼손까지 통지 범위를 확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통지 의무를 부여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개인정보의 삭제·차단·회수 등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함.

나. 단체소송 대상 확대(안 제51조)

현재 단체소송 대상인 금지·중지 청구에 더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도록 단체소송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집단적 피해 구제수단을 강화함.

다. 반복적·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 도입(안 제64조의2제2항 신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 위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 발생,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유출이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강화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7 중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제2호 중 “제34조제1항 및 제3항”을 “제3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분실·도난·유출”을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경우”를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회수·삭제 등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포함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제2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6.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및 제43조에 따른 분쟁조정 등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와 그 행사방법 등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과 유출등의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지·중지를”을 “금지·중지 또는 손해 배상을”로 한다.

제64조의2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9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3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고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가 1천만명 이상인 경우
3.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제75조제2항제17호 중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1항·제2항”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할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제34조제3항”을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출등이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단체소송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7(적용범위)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u>제34조제1항</u> ,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의7(적용범위) ----- ----- ----- ----- <u>제34조제1항 · 제2항</u> ---- ----- -----.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 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 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 ----- ----- ----- ----- ----- -----.
1. (생 략) 2. <u>제34조제1항 및 제3항</u> 에 따 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3. (생 략) ② ~ ⑤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제34조제1항 · 제2항 및 제4 항</u> -----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 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 신고) ①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
(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1. ~ 5.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

1. ~ 5. (현행과 같음)

6.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
배상의 청구 및 제43조에 따
른 분쟁조정 등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와 그
행사방법 등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과 유출등의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u>경우</u>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2. (생략)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생	<u>해당 정보주체에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u> ③ ----- ----- <u>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회수·삭제 등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포함하여 --.</u>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2항----- -- 제4항----- ----- ----- --.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 ----- ----- ----- ----- ----- ----- <u>금지·중지 또는 손해배상을</u> ----- ----- -----. 1. 2. (현행과 같음)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현
--	--

략)

<신 설>

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가 3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고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가 1천만명 이상인 경우

3.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u>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u>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③ ----- 제1항 및 제2항----- ----- ----- -----.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 및 비슷한 규모의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유 규모,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상품·용역의 가격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④ ----- 제1항 및 제2항----- ----- ----- ----- ----- ----- ----- ----- ----- ----- -----.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⑤ ----- 제1항 및 제2항----- -----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11. (생략)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⑧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독촉으로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과 제7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

1. ~ 11. (현행과 같음)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제1항 및 제2항----- 제3항부터 제6항-----

-----.

⑧ ----- 제1항 및 제2항-----

-----.

-----.

⑨ ----- 제1항 및 제2항-----

----- 제8항-----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⑨ 보호위원회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⑩ 보호위원회는 제9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75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6. (생략)

-----.

⑩ -----
----- 제1항 및 제2항 -----

-----.

⑪ ----- 제10항 -----

-----.

제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16. (현행과 같음)

17. <u>제34조제1항</u>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u>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u> 알리지 아니한 자	17. <u>제34조제1항 · 제2항</u> ----- ----- ----- ---- <u>알려야 할 사항</u> ----- -----
18. <u>제34조제3항</u>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18. <u>제34조제4항</u> ----- ----- ----- ----- -----.
19. ~ 27. (생략) ③ ~ ⑤ (생략)	19. ~ 2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